

제 호

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(단체명)
2. 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3. 대표자 성명
4. 소재지
5. 설립 근거
6. 설립 목적

위 기관(단체)을 「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

직인